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5. 30 선고 2023가단549979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

담당변호사 이운용

피 고 1. A

2. B

3. C

4. D

변 론 종 결 2024. 5. 9.

판 결 선 고 2024. 5. 30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20,264,424원 및 그 중 20,172,395원에 대하여 2023. 5. 17.부터 2024. 3. 15.까지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22. 8. 30.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, 피고 B은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22. 9. 1. 접수 제12687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나.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22. 8. 30.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, 피고 C는 피고 A에게

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22. 9. 1. 접수 제12688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
다. 피고 A과 피고 D 사이에 2022. 8. 30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 D은 피고 A에게

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22. 9. 13. 접수 제13035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A, C : 공시송달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B, D : 자백간주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 조영기

별지